

제324회 임시회
2013. 10. 17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10. 17(목)
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노광기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3년 9월 16일
-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8일

-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노광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를 강화하고,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보완(안 제4조)
 -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용자 규정 신설
 -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 적정성 검토 및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 규정 신설
-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규정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용자규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 적정성 검토 및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회계의 재정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,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용도) ①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
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
3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
4. 통합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
5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의 예치
6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

②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,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용도) <u>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</u></p> <p>3.~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용도) ① <u>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목적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</u></p> <p>3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규모가 제1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,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<u>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u>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